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조 국·차규근·김재원

신장식 · 김선민 · 황운하

김준형 • 박은정 • 서왕진

민병덕 • 이병진 • 김준혁

허성무 · 송재봉 · 이재관

윤종군 • 이해민 • 강경숙

이연희 · 용혜인 의원

(2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 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, 순직유족급여,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자녀,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 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). 법률 제 호

#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자녀와 손자녀"를 "자녀, 손자녀 및 형제자매"로 한다.

바. 형제자매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) 제3 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 을 권리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3조(정의) ①		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"유족"이란 공무원이거나 공	5		
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			
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			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		
는 사람을 말한다.	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바. 형제자매</u>		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<u>자녀와</u>	② <u>자녀, 손</u>		
<u>손자녀</u> 는 다음 각 호의 어느	<u>자녀 및 형제자매</u>	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			
정한다.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			
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			
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			
다.	<b>.</b>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